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#### 가. 제정 이유

-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-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2021년 4월 2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,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

#### 나. 제정 내용

-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향후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덤핑 수입을 차단하여, 동 물품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 업체의 피해를 방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